


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8. 11. 29.>
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

*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허가/신고사항변경 (변경차수 : 2)	허가번호	2018-허가담당관-신축허가-472
건축주	케이비부동산신탁(주)		
대지위치	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		
지번	730		
※ "지번"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			
대지면적			8,273.4 m ²
건축물명	탕정면 용두리 730 업무시설	주용도	업무시설(오피스텔, 사무소, 제2송근 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)
건축면적	4,654.92 m ²	건폐율	56.26 %
연면적 합계	56,627.55 m ²	용적률	383.72 %

가설건축물 존치기간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(변경)허가 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·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20년 02월 11일

아산시장



210mm×297mm [보존용지(2종) 70g/m²]